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화약류 제작·조립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0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포·화약류 제작·조립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 등(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7. 24.

다. 회 부 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총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제작·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조립 매뉴얼, 3D 설계파일(CAD, STL 등)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사제총기 제작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 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44조의9).

참고사항

이 법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포·화약류 제작·조립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 등(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등)

가. 개정안 요지

- 총포(사제총기 포함), 화약류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사제총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활용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9 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1. ~ 6의2. (생략) 6의3. <u>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u> 6의4.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③ (생략) <u><신설></u>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u>----- ----- -----포함한다)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6의4.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사제총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활용되는 정보(3D프린터 설계 파일, 조립 매뉴</u>

현행	개정안
<신설>	얼, 영상 링크 등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최근 사제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총포·화약류의 설계도나 조립 영상 등을 통해 누구나 사제총기나 폭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제도상 개인이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이용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¹⁾.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²⁾³⁾.
- 그러나, 실제로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사제 총기나 화약류 제조 관련 영상·파일이 유통되는 경우, 해외에서 제작·게시된 자료라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스크리닝 조치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및 제44조의9 제4항은 총포의 범위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3D 프린터용 설계 파일·조립 매뉴얼·영상 링크 등 총포·화약류 및 그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정보 일체를

1)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시정요구 의결 건수는 2021년 744건에서 2022년 5610건, 2023년 1785건, 2024년 2447건이 의결됐고 2025년 상반기에는 409건이 의결되었음.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제조에 관한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책임자 지정과 삭제·신고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제총기나 화약류 관련 위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과 같이 총기 및 화약류 관련 정보의 유통을 형사적으로 처벌 하더라도 해외에서 제작·유통되는 자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정보 감시와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에서 불법정보의 요건으로 명시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정보 자체나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이용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법정보 판단의 기준으로써 적절한지에 대해 법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703 호)은 사제총기를 포함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4)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② 제1항의 행위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하며, 이를 반복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목적' 판단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여지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총포의 제작 및 설계정보가 불법정보에 포섭되어 규제를 비교적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물리적으로 요건을 특정하면 오히려 규제대상이 세밀하게 좁혀지면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총포 관련 불법 정보를 규제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제총기를 포함한 총포 제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총포 등의 제작에 활용되는 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제총기 제작정보는 디지털성범죄물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안 제44조의9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제도와 유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총기 등 제작정보에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44조의9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제총기의 제작, 조립에 관한 정보를 “설계도, 조립매뉴얼, 3D프린터용 설계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추어 규제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개정안에 따른 총포 관련 불법정보의 개념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3D 프린터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등과 같은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 총포·화약류의 제조·설계에 관한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적용 대상인 ‘성착취물’과 사회적 파급력, 피해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층위(layer)가 다른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기술적, 관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